



### 작성방법

-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.  
\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⑦ 증여자와의 관계"란 :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. (예시 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: 자)
- "⑬ 재산구분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분	증여재산	증여재산 (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)	비과세재산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법인 출연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공익신탁 재산)	과세가액불산입 (장애인 신탁재산)	증여재산가산
코드	01	02	03	04	05	06	07

- "⑭ 재산종류"란 : 토지, 건물,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
- "⑮ 지목 또는 건물·재산종류"란 :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(전, 답 등)을 기재하고, 주택,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(아파트, 상업용건물, 오피스텔 등) 등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(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, 상장주식 등)을 기재합니다.
- "⑯ 소재지·법인명 등"란 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.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·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.  
가.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)을 기재합니다.  
나.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(예시 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㈜○○건설)을 기재합니다.
- "⑳ 사후관리 위반코드"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사후관리 위반유형	관련 조문	코드
기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1항제1호	01
기업을 승계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1호	02
기업을 승계한 후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1호	03
기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2호	04
기업을 승계한 후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제3호	05

- "㉑ 증여세액"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.
- "㉒ 일수"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- "㉓ 이자율"란에는 납부유예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)을 적습니다.